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시행 근거 마련
나.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 없어 관련 조항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 가.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물품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신설
나.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준용규정) 삭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금 등의 지원) (생략)</p> <p><신설></p> <p><u>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u> <u>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u></p>	<p>제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 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 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 다.</u></p> <p><삭제></p>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신설에 따른 자원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필요물품 보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황인화 (☎9215)